Vol. 37 2020년 3월
해사법률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윤희성 본부장
■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UU 어업 행위 확산 예방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법적 제도 강화 및 회원국의 협조 요청

IUU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IMO 케이프 타운 협정 발효와 토레몰리노스 선언 서명[a)b)]

- IMO는 어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강제적 조항을 개발하고 개정하였으며 2012 케이프 타운 협약을 채택함
  - 국제해상인명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과 같은 국제 협약은 화물선 및 여객선을 포함한 상선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었고 SOLAS V장에서는 모든 선박의 항해 안전에 적용되는 여러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IMO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유엔식량농업기구 및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여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를 다루는 비강제적 조항을 개발하고 개정하였음
  - 관련된 내용으로 2005 선원(어부)과 어선의 안전규범, 2005 소형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에 대한 자발적 지침 개정, 길이 12미터 미만 어선 및 갑판없는 어선에 대한 안전 권장사항 등이 있음
  - 1977년 IMO는 어선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했으며 그 이후 일부의 내용이 1993년 토레몰리노스 프로토콜에 의해 수정되었음. 이 두 조약이 모두 발효되지 않았기에 IMO는 추후 2012 케이프타운 협약을 채택하여 이전 조약의 조항들을 시행함
- IMO 케이프 타운 협정의 발효가 불법적 어업 행위를 막고 선원들의 해상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20년 3월 10일에서 11일까지 크로아티아, 오파티야(Opatija)에서 열린 고위급 유럽연합 해양 회의에서 IMO 사무총장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케이프 타운 협정(CTA ; Cape Town Agreement) 의 필요성을 강조함
  - 어선 안전에 대한 IMO 케이프 타운 협정의 발효는 선원(어부)들의 해상 안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불법적이며,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 행위(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회의 기간 동안, 불법적 어업 행위 근절 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인되었으며, 불가리아, 폴란드 및 포르투칼 총 3개국은 IUU 어업 행위를 막기위해 위해 “토레몰리노스 선언(Torremolinos Declaration)”에 서명하였고, 또한 채택 후 10주년까지 케이프 타운 협정을 비준하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음
  - 케이프 타운 협정은 선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의 개요와 24미터 이상 길이의 어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산업계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까지 14개국이 케이프 타운 협정을 비준하였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어업과 관련된 해상 안

전을 향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IUU 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양 쓰레기를 포함하여 어선의 오염을 줄이는데 유용한 강제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함

〈표 1〉 CTA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적용, 자격 요건 및 범위	• CTA는 길이가 24미터 이상 또는 총 톤수로 그에 상당하는 상업용 어선에 적용됨 • 협약의 당사국은 10년 이내 무선통신 장비(CTA 제9장) 관련 조항 제정, 5년 이내 구명 정비(제7장), 비상 절차(제8장) 및 항해 장비(제10장) 관련 조항을 이행해야 함
기술조항	• CTA의 2장부터 10장은 어선의 설계, 건조 및 장비요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 선박의 크기에 따라 24-45미터, 45-60미터, 60미터 이상으로 분류함
CTA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	• 공해나 영해 밖에서 상업적 조업을 하는 선박의 대표적인 크기가 24미터 이상이기에 CTA 규정은 여기에 적용됨 • 24미터 미만의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하며 국내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음

자료: https://www.pewtrusts.org/-/media/assets/2019/02/ctaexplained_brief---ko.pdf 재구성 (2020.03.17. 검색)

IUU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2019년 스페인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50개국이 토레몰리노스 선언에 동참함

- 2019년 10월 21일에서 23일 기간 동안 스페인의 말라가, 토레몰리노스 지역에서 스페인 정부와 IMO가 공동으로 주최한 IUU 어업 행위에 관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됨
-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을 위한 주요 IMO 조약인 케이프 타운 협정의 비준을 장려하고, 케이프 타운 협정의 발효를 통해 어선에 대한 국제안전 표준을 확립함으로써, IUU 어업 행위에 대한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 회의 기간 동안 총 50개국이 토레몰리노스 선언에 동참했으며, 어선 안전에 관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이 채택 후 10주년까지 발효될 것이라고 선언국들의 결의를 공개적으로 밝혔음
- 또한 어선에 대한 국제안전표준을 적용하여 항만 국가들이 어선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강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통제 및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을 기대함
- 회의에서 IUU 어업 행위에 대항하는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성명을 채택하였음. 성명서는 케이프 타운 협정의 중요성과 IUU 어업 행위 퇴치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케이프타운 협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FAO/ILO/IMO 공동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케이프 타운 협정에 대한 중요성 언급[c)d)]

IUU 어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어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IUU 어업 행위 방지에 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및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 IMO 실무 그룹 회의가 2019년 10월 23일부터 25일

동안 개최됨

- IUU 어업 행위에 관한 FAO/ILO/IMO 공동 실무 그룹(JWG; Joint Working Group)은 1999년 4월에 개최된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항만국과 기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족됨
- 수천 명의 선원이 어로활동 중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IMO는 수년 간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어선 안전을 향상시키고 해상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선 안전에 관한 주요 IMO 조약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실무그룹은 회의에서 케이프 타운 협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제도적 및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로서 본 협정에서는 어선 건조, 화재방지, 통신장비, 구명기기 등 필수 국제 요건이 포함됨
-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기국, 항만국, 해안국들이 어선 안전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IUU 어업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 CTA 조항의 단계별 이행에 관한 지침

케이프타운 협정

장	목차	적용		이행까지의 시간
		신규	기존	
2장	건조	✓		비준 시
3장	안정성	✓		비준 시
4장	기계 장비	✓		비준 시
5장	소방 안전	✓		비준 시
6장	선원 보호	✓		비준 시
7장	구명 장비	✓		비준 후 5년 이내
8장	비상 조치	✓	✓	비준 후 5년 이내
9장	무선통신	✓	✓	비준 후 10년 이내
10장	항해 장비	✓	✓	비준 후 5년 이내

자료: https://www.pewtrusts.org/-/media/assets/2019/02/ctaexplained_brief---ko.pdf (2020.03.17. 검색)

UN을 포함한 IMO 및 FAO는 국가 차원의 IUU 어업행위에 관한 문제와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

- 제4차 공동 IMO/FAO 실무그룹은 2019년에 만나 IUU 어업 행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고, UN을 포함하여 3개의 기관이 국가 차원의 검사 절차를 위한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함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보장은 UN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목표의 달성, 빈곤·기아·교육, 훈련·인프라 및 파트너쉽과 관련된 UN SDG와도 명확한 연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UN SDG 14 목표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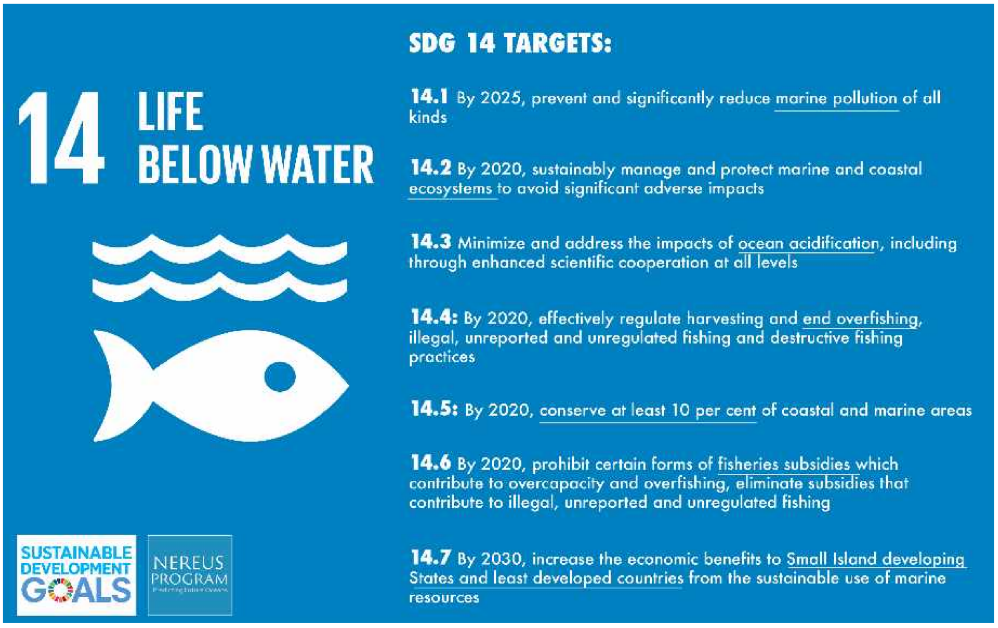

자료 : http://archives.nereusprogram.org/the-un-oceans-conference-and-sustainable-development-goals-are-partnerships-providing-the-way-forward/ (2020.03.17. 검색)

이혜진 전문연구원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jinlee@kmi.re.kr / 051-797-4626)

참고 자료

a)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검색일: 2020.03.16.)
b) http://www.iuuwatch.eu/2019/04/imo-conference-on-fishing-vessel-safety-and-iuu-fishing-in-torremolinos-spain-21-23-october-2019/ (검색일: 2020.03.17.)
c) http://archives.nereusprogram.org/the-un-oceans-conference-and-sustainable-development-goals-are-partnerships-providing-the-way-forward/ (검색일: 2020.03.17.)
d) https://www.pewtrusts.org/-/media/assets/2019/02/ctaexplained_brief---ko.pdf (검색일: 2020.03.17.)